

# 화물차 불법증차 관련 지급명령사건 배상금 지급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

의안 번호	제 369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4. 6. .  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우리 구 공무원이 불법 증차한 화물차와 관련된 지급명령사건이 확정되어 예비비로 배상금을 지급하고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·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사용근거

- 1)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」 제19조(예비비의 사용)
- 2)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·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」 제3조(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)

### 나. 지급 개요

- 1) 사 건 명: 화물차 불법 증차 관련 손해금 지급명령
- 2) 지급일자: 2024. 4. 24.
- 3) 지급대상: 지급명령사건(2건)
  - 가)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4차전721 손해배상(기)
  - 나)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4차전722 손해배상(기)
- 4) 예비비 배정액: 금390,241,000원

#### 다. 예비비 사용 이유

- 1) 2024년 3월 확정된 지급명령 사건(2024차전721, 2024차전722)에 대한 배상금 지급

### 3. 추진경과

가. 예비비 사용 계획 및 승인요청: 2024. 4. 9.

나. 예비비 배정(기획예산과): 2024. 4. 12.

다. 예비비 집행: 2024. 4. 24.

1) 배정액: 390,241,000원

2) 집행액: 390,240,485원

가) 2024차전721: 318,708,555원

나) 2024차전722: 71,531,930원

3) 잔액: 515원